

농림부 농업경영체(등록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련

한·미 FTA 체결, DDA(도하개발아젠다)로 인한 개방 확대와 농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영규모화 및 소득안정 지원이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평균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발전가능성이 높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집중될 수 있는 맞춤형 접근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스스로 교육·전문컨설팅을 활용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범위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으로 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도입하며, 후계농업인력의 지원, 농업경영체에 경영규모화 및 경영안정 우선 지원, 농가소득 안정직불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령농업인 은퇴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설립, 등기, 해산 등 법인제도 운영 및 농업법인의 창업·발전을 지원하며, 농업경영체의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교육·컨설팅 지원, 농업회계기준 모범례, 농업경영혁신전문 기관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주체를 육성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촌사회의 안정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농업정책의 핵심대상이 될 농업경영체의 기준 조정 및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안 제2조 내지 제7조)

-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을 정부의 농업생산효율화 지원 및 농업소득의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나, 농업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농업경영체의 범위를 제한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수준에 알맞은 맞춤형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농업경영체의 범위에 모든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포함하였던 것을 농업인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조정함. 또한 농업경영체는 농림부장관에게 경영규모 등 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부장관은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업 생산효율화 또는 농업소득의 안정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업생산효율화 또는 농업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에 집중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에 근거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한국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후계농업인력의 양성 및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규모화, 경영안정, 고령농 은퇴 지원의 근거 (안 제8조 내지 제13조)

- 시장개방 확대와 농산물 소비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젊고 능력 있는 후계농업인력의 확보와 농업경영체의 성장단계별로 규모화, 경영안정의 지원이 필요하며 고령농의 농지 등이 후계농업인력에게 이양되는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 * 농업경영주 연령(40대미만/60대이상) : ('90) 15%/3% → ('06) 3%/59%
-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농업창업교육 및 인턴연수 등을 지원하고 창업 교육실적등을 심사하여 우수한 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자금 또는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농업경영체에게 경영규모 확대와 재해보험 가입 등 경영안정 정책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연령이상의 고령농의 은퇴 및 생활안정 지원과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농지 등의 이양을 촉

- 진할 수 있는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농업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연수의 시행,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젊고 능력 있는 신규 농업인력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별 규모화 및 재해보험 등 경영안정 지원시책과 고령농의 은퇴 지원시책의 추진으로 농업구조의 개선과 농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됨

○ 농업경영체의 농업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안 제14조 내지 제19조)

- 한·미 FTA 발효와 DDA 타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수입농산물 증가로 인한 농업 생산액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됨. 급격한 농가소득의 감소는 농업생산기반의 약화와 국민에 대한 안정된 식량공급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전반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현재 과수, 쌀 등 품목별로 추진되어 온 소득보전직불제를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임
- 농업경영체단위 소득보전직불금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지급대상자의 기준, 소득안정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약정의 체결,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적립금 납입 및 적립금의 반환 근거, 직불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조수입의 기준, 직불금 지급 기준과 지급절차, 직불금의 회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시장개방의 확대 등 농업경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핵심주체인 농업경영체가 농가 소득의 급격한 하락이 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경영혁신과 농업투자 등을 통해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됨

○ 농업법인제도의 근거 및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안 제20조 내지 제27조)

-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경영의 규모화,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농의 협업화 또는 기업적 경영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업법인제도의 근거를 두고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본 법 제정에 따라 핵심적인 농업경영체 육성 시책인 농업법인제도의 근거를 본 법으로 이관하고 농업법인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법인의 효율화를 위해 일부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합원의 기준과 준조합원, 농업법인의 해산 등에 관하여 현행법과 같이 규정하고, 영농조합법인등 명칭을 악용하는 사례방지를 위한 유사명칭사용의 제한근거,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상법 관련 규정에 준하여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서의 조직변경,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농업법인을 해산의제하고 법원행정처장 직권으로 등기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새로이 제도가 개선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을 통하여 제3섹터 방식의 농업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농업인조합원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비농업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는 등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업회계기준 모범례, 농업교육 및 전문컨설팅, 농업전문투자조합 출자 등 농업 경영 혁신 기반 구축 관련 조항 (안 제28조 내지 제35조)

-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 및 기술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농업회계,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 농업경영체 경영혁신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농업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회계기준모범례 제정 근거, 농업경영체 교육계획 수립·조정을 위한 농업교육심의회, 농업인단체 등에 대한 교육운영 지원 근거, 농업교육 및 전문컨설팅 기관에 대한 평가, 농업교육정보 및 교육이수실적정보를 통합관리할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제도화하는 한편, 농업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전문 투자펀드의 결성지원 및 출자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경영혁신정책의 관리 및 평가, 연구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 농업경영혁신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조직적 기반 마련으로 농업경영혁신 정책추진과정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농업경영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